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명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230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서명옥ㆍ서천호ㆍ박준태

진종오 · 김상훈 · 배준영

김예지 • 김용태 • 고동진

조경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, 그 기간 동안 환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 해야함.

반면, 영국은 항암제기금(Cancer Drug Fund, CDF)과 희귀의약품기금(Innovative Medicine Fund, IMF)을 운영 중이며 이탈리아는 제약사 판촉비 5%와 정부재원으로 희귀질환 약제의 기금 운영 등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.

이에 대한민국도 '희귀질환관리기금'을 신설하여 희귀질환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,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923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 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희귀질환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"을 "제20조의2에 따른 희귀질환관리기금"으로 한다.

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희귀질환관리기금의 설치) 정부는 희귀질환검진,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비 지원, 희귀질환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 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희귀질환관리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 다)을 설치한다.

제20조의3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- 1. 정부출연금
- 2. 다른 회계 또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,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에 따른 복권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
- 3. 기금운용 수익금 등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- 제20조의4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,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- 1. 희귀질환검진사업의 지원
- 2. 희귀질환환자의 의료비 지원
- 3. 희귀질환의 발생·예방·진단·치료·관리 및 희귀질환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
- 4. 희귀질환의 예방·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 급
- 5. 희귀질환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, 지급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의5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·관리하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 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 - ③ 기금의 운용・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의6(기금의 회계기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장수관·기금재무관·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,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·기금 재무관·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 및 기금수입담당임원·기금 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·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,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의료비 지원 사업) ① 국	제12조(의료비 지원 사업) ①
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	
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	
려하여 희귀질환의 예방, 진단	
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	
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	제20조의2에 따른 희귀질환
<u>국민건강증진기금</u> 에서 지원할	<u>관리기금</u>
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20조의2(희귀질환관리기금의
	설치) 정부는 희귀질환검진, 희
	귀질환환자의 의료비 지원, 희
	귀질환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
	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
	위하여 희귀질환관리기금(이하
	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<u><신 설></u>	제20조의3(기금의 조성) 기금은
	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
	<u>다.</u>
	<u>1. 정부출연금</u>
	2. 다른 회계 또는 「국민건강
	증진법」에 따른 국민건강증
	진기금, 「복권 및 복권기금
	법」에 따른 복권기금 등 다

<u><신</u>설>

<신 설>

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

- 3. 기금운용 수익금 등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제20조의4(기금의 용도) ① 기금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,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- 1. 희귀질환검진사업의 지원
- 2. 희귀질환환자의 의료비 지원
- 3. 희귀질환의 발생·예방·진 단·치료·관리 및 희귀질환 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
- 4. 희귀질환의 예방・진단 및

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

 발 및 보급
- 5. 희귀질환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 차, 지급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의5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 ·관리한다. <신 설>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 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- ③ 기금의 운용·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제20조의6(기금의 회계기관) ①
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
 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
 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
 에서 기금수입징수관・기금재
 무관・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
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5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, 그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

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· 기금재무관·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 및 기금수입담 당임원·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 임원·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,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 재에게 알려야 한다.